

Deloitte Insights

January 2026



감독 대응 및 경영진 책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감사

자금세탁방지(AML) 전략 | 한국 딜로이트 그룹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01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과 경영진의 책임 리스크 부각	03
0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환경 변화와 주요 관리 과제	04
03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집행 환경	05
04	기존 자금세탁방지 감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	10
05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감사의 전략적 의미	13
06	딜로이트 자금세탁방지 감사 솔루션	14



01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과 경영진의 책임 리스크 부각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심거래를 식별·모니터링하고 이를 국가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다. 특금법은 명시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체계,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의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경영진과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준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❶ **첫째, 경영진 제재 리스크이다.** 특금법 위반은 다른 금융 관련 법규 위반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실무상 다수의 사안에서 보고책임자가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보고책임자가 임원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인해 임원의 책임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감독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❷ **둘째, 입증책임의 부담이다.** 외환 불법송금 등 자금세탁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단순히 위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합리적 수준에서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사후적 소명이 아닌, 평시의 체계·운영·통제 수준 전반이 검증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❸ **셋째, 위반 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제재의 특히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경우, 국내 제재를 넘어 해외 규제당국에 의한 제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라트비아 제3위 은행이었던 ABLV는 2018년 북한 연계 기업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이후 파산에 이르렀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미비가 금융회사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최근 2~3년간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집행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사업회사는 경제제재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고려할 때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그 운영이 경영진 개인의 책임 문제 또는 막대한 금전적 제재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책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검증하는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0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환경 변화와 주요 관리 과제

금융회사를 둘러싼 내부통제 환경은 규제의 정교화, 기술 혁신의 가속, 리스크 구조의 복합화가 동시에 진전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내부통제가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경영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리 체계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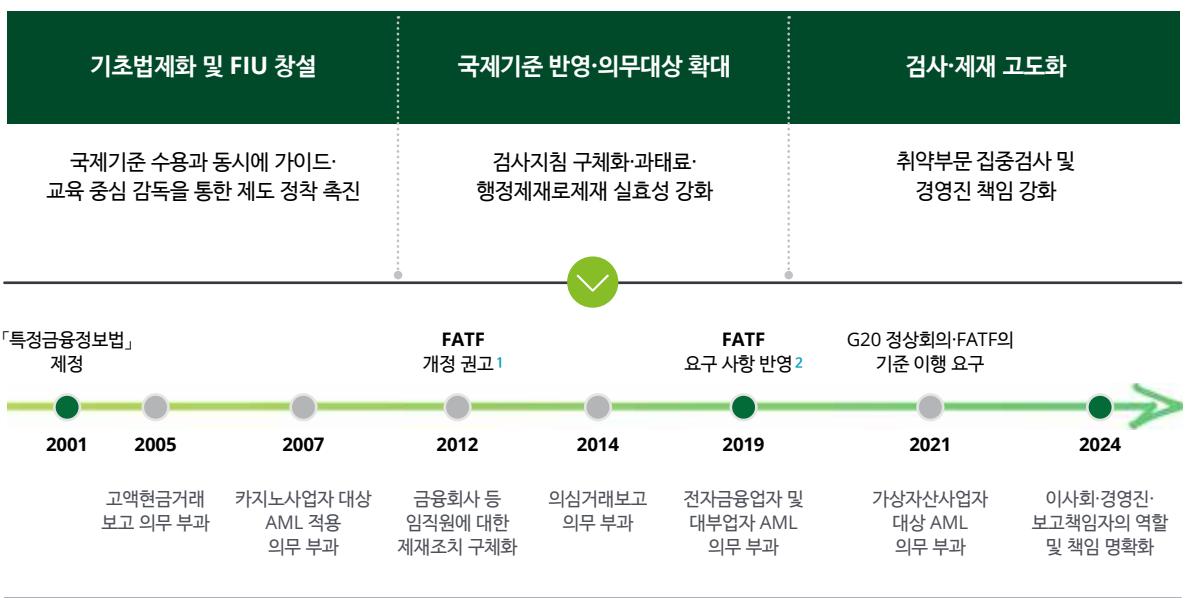
- ✓ **규제·감독체계의 다중화:** 국내 법령과 감독규정에 더해 국제기준(FATF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면서 안정성, 투명성, 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등 다수의 규제 목적이 동시에 구현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규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넘어, 규제 간 정합성과 통합적 관리 수준이 내부통제의 주요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 **경영진 책임성 및 책무구조 강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가 강화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주체와 보고 체계가 보다 명확히 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실제 운용 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관리 책임이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 **리스크 기반 접근(Risk Based Approach)의 내재화:** 내부통제는 포괄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따라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고객·상품·거래단위별 위험도 산정 결과가 실제 통제 강도를 결정하는 체계로 일상화되고 있다.
- ✓ **데이터·기술 환경의 비약적 확장:** AI, RPA,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내부통제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데이터 품질, 모델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등이 새로운 통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화 기반의 증빙 확보 및 감사추적(trail) 체계는 감독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 ✓ **운영·프로세스 통제의 견고화:** 내부통제는 절차 설계 자체를 넘어, 실행의 일관성과 증빙 체계의 정합성까지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프로세스 표준화 및 문서화는 사고 예방과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 통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 **조직문화 및 인적통제의 중요성 확대:**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제도와 구조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준법 문화의 정착, 성과 보상 체계와의 정합성, 내부신고 보호 장치 등 인적·문화적 요소가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 **외부관계 및 국제협력 요인의 확대:** 해외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국제 제재리스크, 외주 및 공급망 관리 등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까지 내부 통제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회사는 내부 활동 뿐 아니라, 외부 이해 관계자와 연계된 리스크까지 포괄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 환경의 변화는 자금세탁방지 영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AML 규제는 제도 정비 수준을 넘어, 국제기준의 상향, 감독당국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 집행 강도의 실질적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단순한 규정 대응 차원을 넘어, 경영진 책임과 감독 대응의 핵심 관리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03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집행 환경

금융회사를 둘러싼 국내 내부통제 환경 변화와 더불어, AML 규제의 기준과 집행 강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 규범의 개정, 감독당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변화, 그리고 제재 집행의 실효성 제고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제도적 변화



1. 고객확인제도 의무대상, 리스크 기반 접근(Risk Based Approach), 자료보존 기준 등의 구체적 이행 촉구

2. 해외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AML 의무 부과, 위험기반접근법, 금융거래자료 보존, 일회성 금융거래 대상 고객확인,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변경(1천만원), 의무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절차 및 지침 준수여부 감독 시행

자료: 법제처, Deloitte Analysis

국제기준 상향과 글로벌 감독 기조의 변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권고안과 실무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자금 흐름의 추적·차단·회수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상시적 모니터링을 중시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와 FATF의 최근 보고서 역시 금융시장 무결성 강화를 위해 다부문 협력과 감독 역량의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금세탁방지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준법 이슈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글로벌 정책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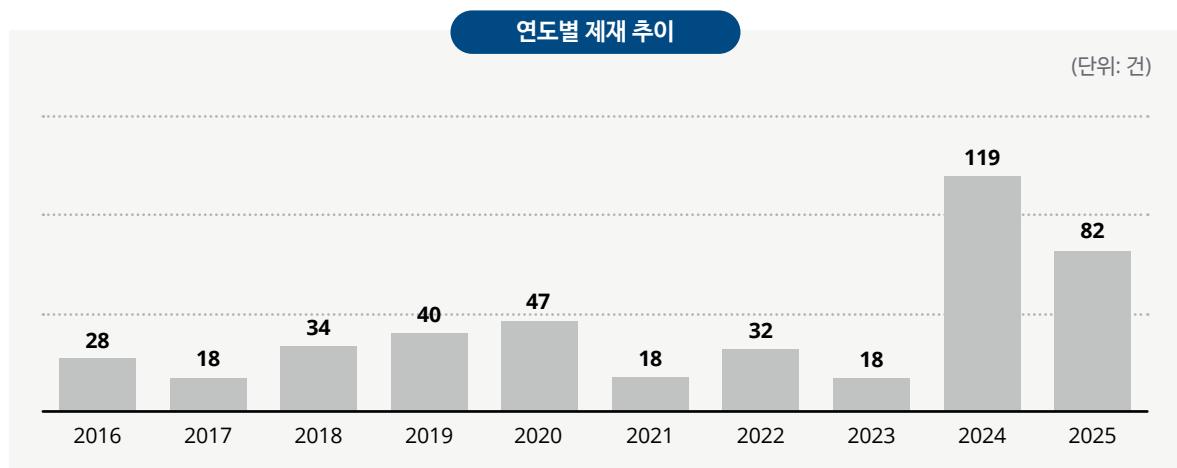
국내 규제·감독 및 집행 체계의 실질적 강화

국내에서는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AML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감독지침과 세부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해외거래, 고액거래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과태료,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규제 위반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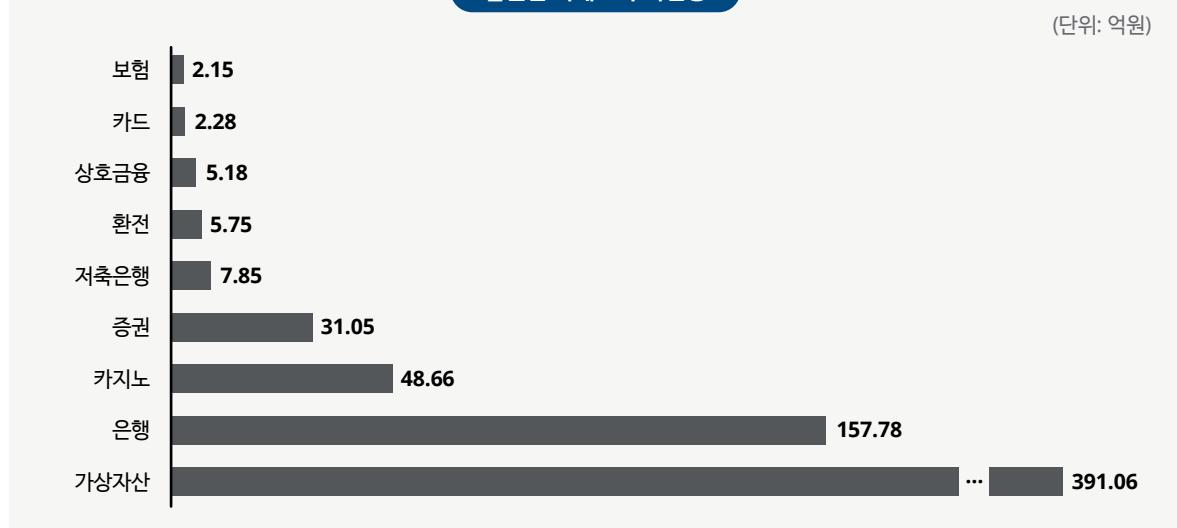
최근 다수의 관할권에서 고액의 과태료 및 제재가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위반에 대해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무관용(Zero-Tolerance)에 가까운 집행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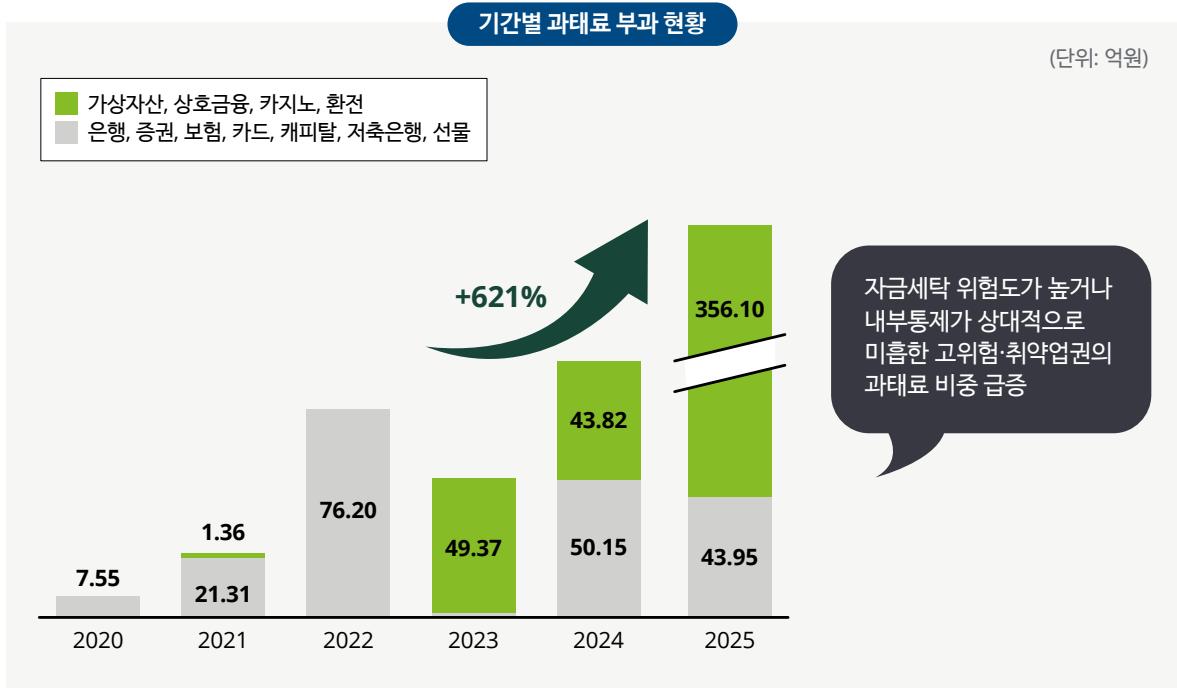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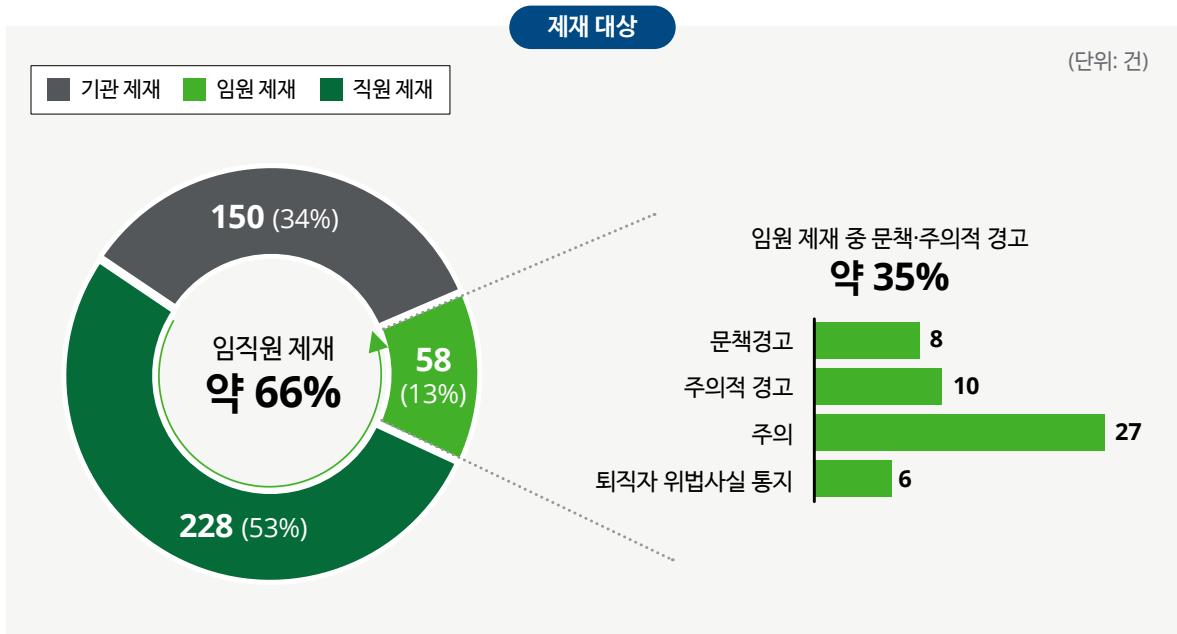
그림 2. 자금세탁방지 제재 현황



업권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공시, Deloitte Analysis

참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2023. 09 부터 제재 공시 수행. 전자금융·대부업의 경우 현재까지 과태료 미발생

그림 3. 자금세탁방지 항목 별 제재 추이

고객신원확인 및 위험평가

고객신원확인



위험평가



규제준수 압력의 지속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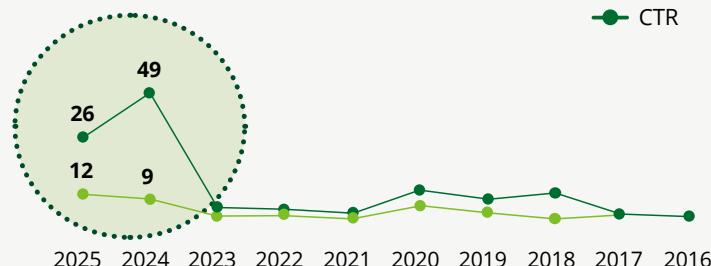
2016년 대비 2025년 제재 건수는 약 383%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강화·상향 흐름 고객확인(KYC)에 대한 선제적 강화와 지속적 검증 요구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질적 검증 본격화

검사 방향이 단순 위규 사항 처벌에서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로 확장, 모니터링의 기반이 되는 위험평가(RA) 모형의 적정성 확보 필요

거래 모니터링

의심·고액현금거래보고



STR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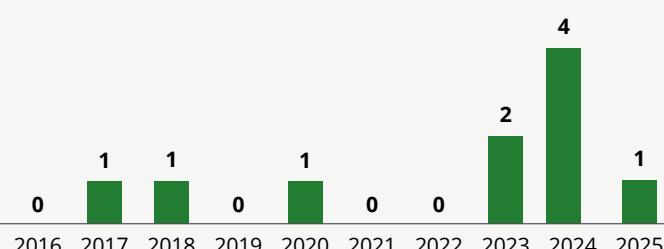
특정 업권 집중 감독

- 특정 업권에 대한 집중 감독 시 제재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
- 특정 업권의 과거 제재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CTR·STR 보고 체계 적정성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

참고: 2024년도의 경우 상호금융권에 대한 집중 제재 2025년의 경우 환전업권에 대한 집중 제재

자금세탁방지 체계

내부통제



시중은행

시중은행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운영의 과도기를 넘어 안정적 운영중이나, 해외법인(지점)의 경우 국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 필요

시중은행 외

특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참고: RBA 관련 제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경영유의 이력이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

금융회사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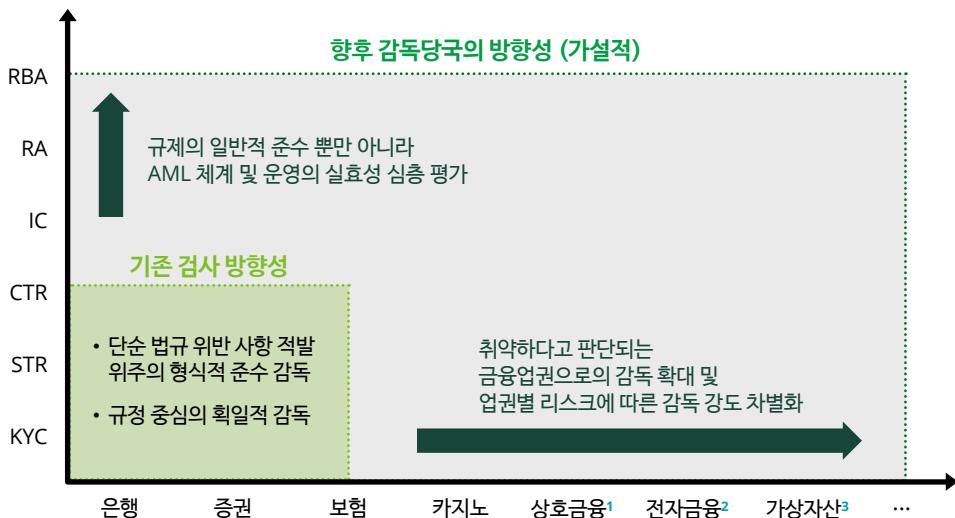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변화는 금융회사에 명확한 실무적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AML 정책과 감독 기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업무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정하고 법·규정 변경에 대한 이행 계획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모니터링,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핵심 영역에서 데이터 품질과 자동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집행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감독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경영진, 리스크관리부서, 준법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증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통제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양성, 내부신고 체계의 실효성 확보, 준법 문화 정착 등을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한 운영 부담을 조직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 자금세탁방지 항목 별 제재 방향성 (가설적)



1.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MOU 체결(2024. 02)을 통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공조 강화
2. KoFIU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심사·검사 강도 제고(2024.02)
3. 자금세탁방지 체계 준수 의무 부과 2년 경과, 현장검사 실시 예고 (2022)

Objectives	Verification / Points
기본 준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신원확인(KYC),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의심거래 보고(STR) 및 거래기록 보존 의무 준수를 보편적으로 요구 •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보고는 되었는가' 등이 주요 감독 기준
위험 기반 감독 & 데이터 중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TF 권고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여 위험 기반 접근법 (Risk-Based Approach, RBA) 도입 • 금융정보분석원이 2023년 발표한 내부통제 책임강화를 발표하였고,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실질적 통제의 실효성'이 주요 점검 대상
선제적·실시간 감독 및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L 체계에 대한 책임과 감독의 엄정화를 선언하며, 보고 책임자(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 명확화, 전문성 요구, 그리고 독립된 지위 보장 강화를 추진 • AML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감시, 데이터 분석 기반 탐지, 자동 보고 체계, 실시간 대응 체계 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추세

자료: Deloit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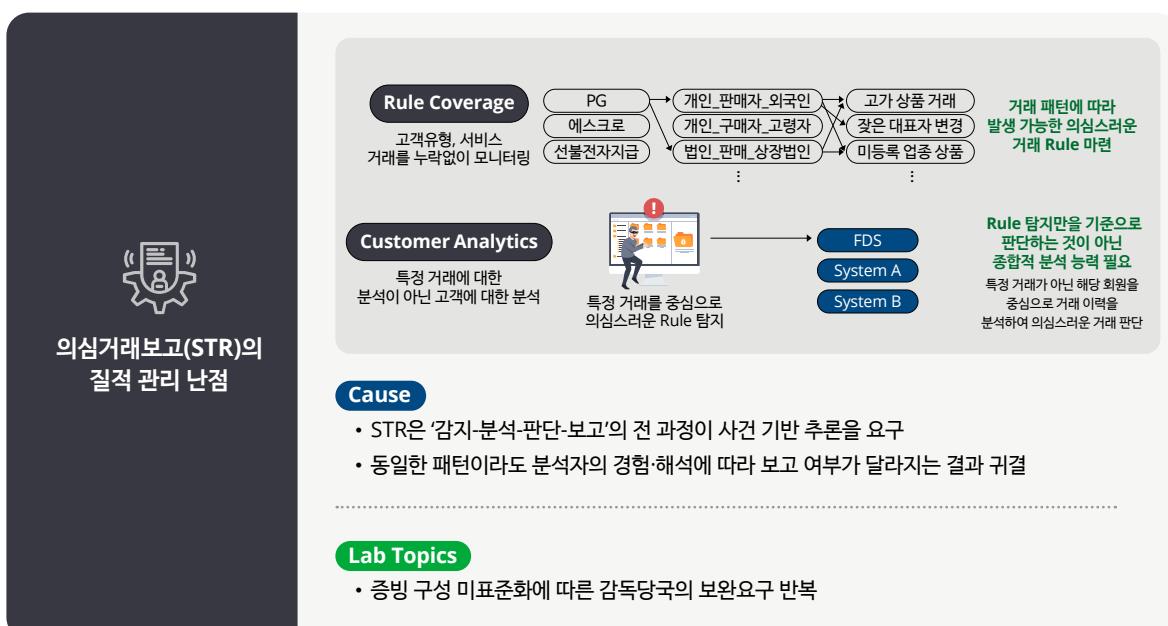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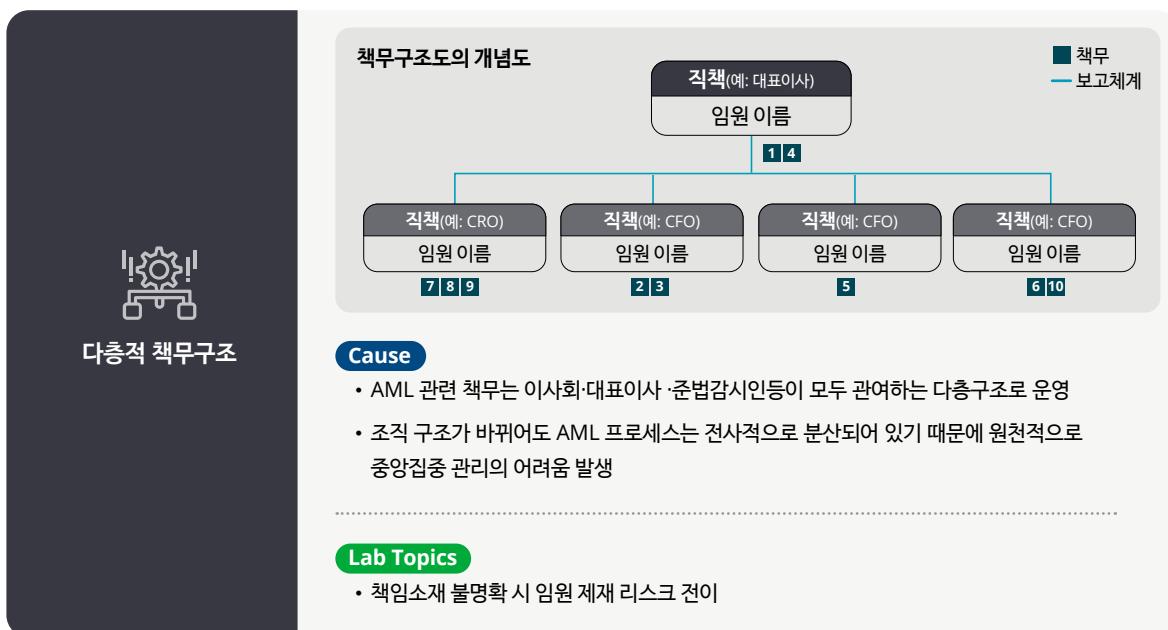
04 기존 자금세탁방지 감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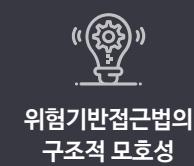
독립적 자금세탁방지(AML) 감사 또는 점검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재 사유가 반복·지속되는 사례는 감사 자체의 존재만으로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감사의 성실성 여부를 넘어, 감사 구조·범위·활용 방식 전반에 내재된 한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실효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감사 범위와 표집의 한계:** 연간 감사는 통상 샘플 기반으로 수행되며 전사적 프로세스나 전체 거래를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특정 고위험 영역이나 시기적 편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잠재된 취약점이 누적되어 반복적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 ✓ **감사 시점과 집행 간 시차 문제:** 연 1회의 점검 방식은 규제 환경과 리스크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감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통제 취약점이 다음 감사 시점까지 장기간 노출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 ✓ **시정조치 이행의 미흡 또는 지속가능성 부족:** 감사에서 권고된 개선안이 수립되더라도 실행이 지연되거나 책임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통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발성 조치에 그칠 경우, 동일한 결함이 재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 ✓ **근본원인(root cause)에 대한 접근 부족:** 절차서 정비나 형식적 통제 보완 등 표면적 조치에 국한된 개선은 근본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다. 데이터 품질, 시스템 구조, 업무 문화, 인센티브 체계 등 근본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 ✓ **통제 설계와 운영(Operating Effectiveness)의 괴리:** 문서상 통제 설계는 존재하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통제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즉, '설계된 통제'와 '운영되는 통제' 간 괴리가 발생하며, 이는 제재로 직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 **데이터·시스템 품질 문제:** KYC, 거래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탐지·분석·보고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
- ✓ **감독·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 규제기준과 감독관행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감사가 규정변화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 새로운 규제 요건에 대한 미준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 **조직문화·인센티브의 비정렬:**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문화나 통제 준수를 저해하는 보상 체계가 유지될 경우, 현장의 규정 준수 수준은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규제 위반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 ✓ **외부위험·공급망·대외관계의 복잡성:** 외부 협력기관, 제3자, 공급망과 관련된 리스크는 감사 범위 밖에서 발생하거나 감사 주기 내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부 요인은 금융회사 통제 범위를 넘어 존재하면서도, 지속적인 제재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 ✓ **감사 독립성·전문성의 한계(또는 인식의 문제):** 형식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감사인의 접근 권한 제한, 내부 정보 제공의 제약, 또는 AML 전문성의 부족이 존재할 경우 문제를 과소보고하거나 권고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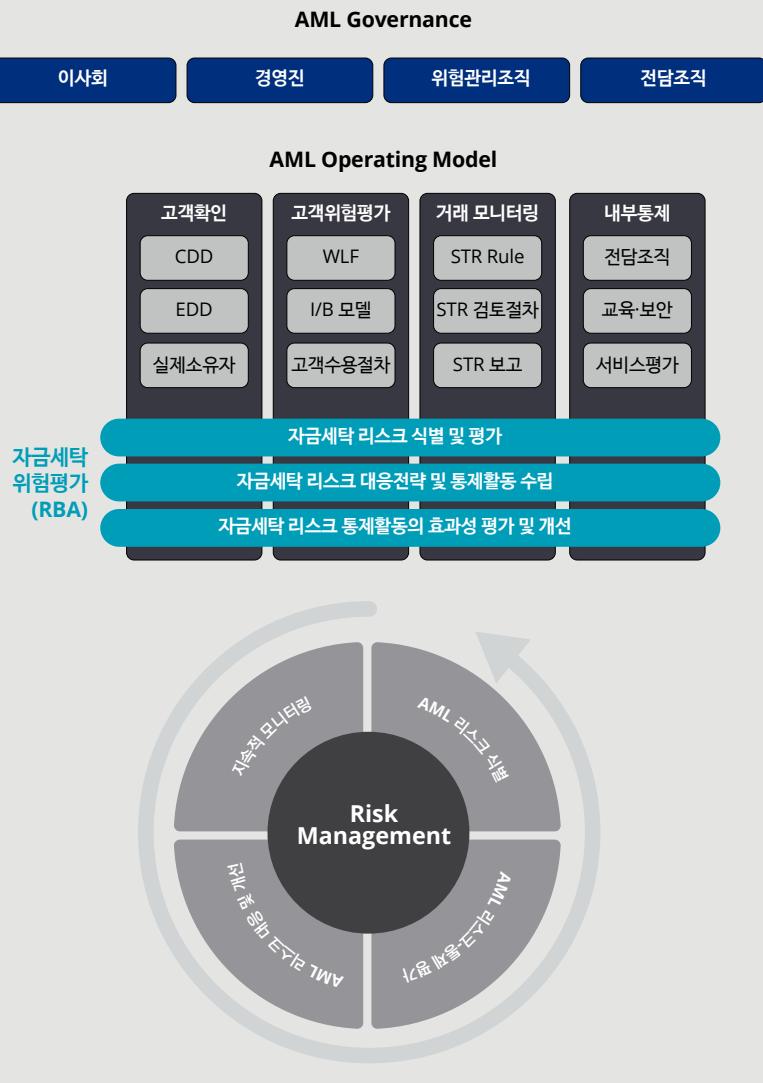
그림 5. 금융회사 내부 AML 운영의 구조적 취약점

AML 제도는 국제 기준, 감독 요구, 기술 인프라, 조직 역량이 교차하는 복합적 체계로서
 금융회사의 운영 현실과 규제 기대 사이에 구조적 간극을 필연적으로 내포,
 이 구조적 간극은 곧 감독 대응·경영진 책임·지속적 준법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정확한 진단과 독립적 검증 없이는 스스로 해소되기 어려운 조직적 제약을 형성





위험기반 접근법의
구조적 모호성



Cause

- AML 제도는 FATF가 규정한 RBA 원칙을 따르지만, '적정한 수준'의 기준 불명확
- 동일한 고객군이라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채널 비중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

Lab Topics

- 감독기관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과정을 요구하는데,
판단의 모호함이 곧 제재 리스크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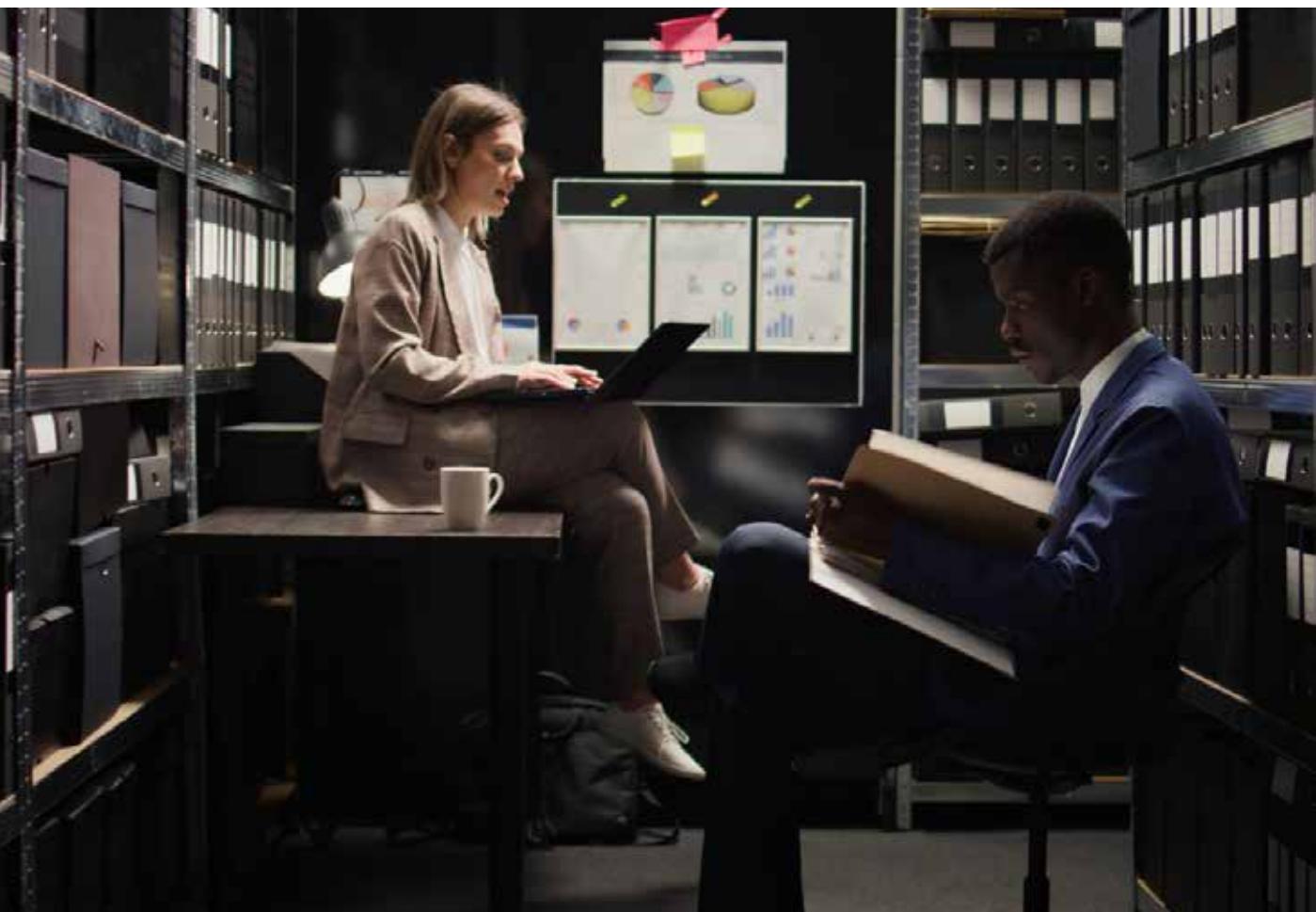
자료: Deloitte Analysis

05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감사의 전략적 의미

내부감사 또는 정기적인 독립적 점검이 수행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지속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현실은, 자금세탁방지 통제의 실효성이 점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감사의 설계 방식, 전문성, 시의성 및 이행 관리 수준에 의해 좌우됨을 시사한다. 이는 형식적 준수 여부와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통제 효과 간에 구조적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외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독립적 자금세탁방지 감사는 통제 체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다. 전문 회계법인은 내부 조직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객관성·실행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통제 설계와 운영의 정합성, 개선 이행의 완결성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감독 대응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앞서 제시한 감사 범위·접근 방식·이행 연계 방안을 토대로 파일럿 형태의 독립적 AML 감사 또는 집중 진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이는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독 대응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06 딜로이트 자금세탁방지 감사 솔루션

딜로이트 AML 감사 가치

금융회사 자체 감사 시 발생 가능 사례 (예시적)



객관성과 독립성

내부 평가에는 구조적 편향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 잔존으로 인한 이해관계 이슈



재현·검증 중심 방법론

실지감사의 방법이 아닌 인터뷰 진술 또는 문서 검토를 통한 단편적 진단 형식의 감사



Root-cause 기반 개선방안

문제의 단순 지적으로 인해시스템·프로세스·조직·데이터별 근본원인 미규명



감독수용형 보고서 구조

감사보고서 미존재 혹은 단순한 권고 나열식 내용으로 감사보고서 본연의 기능 상실



임원 책임 방어 효익

임원·책임자에 대한신분 제재가 가능함에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방어 논리 부재



Deloitte's Value

조직 내 이해관계를 배제한 방식으로 감사 절차를 설계·집행하고, 감사범위·방법론·결론을 투명하게 문서화

신뢰의 근거: 대표이사·이사회·감독당국에 제출 가능한 신뢰자산으로서 객관적 무게 부여

샘플링 기반의 거래·STR 케이스 검증, 관련자 인터뷰와 프로세스 트레이싱을 결합해 '원인-현상-증거'의 연결고리 완성

증빙으로 말하는 접근: 감독기관 질의 시 즉시 재현 가능한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조사·보완요청 가능성 감소

심층분석을 통해 반복적 결함의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우선순위·책임·자원을 명시한 실행로드맵 제시

실행으로 연결되는 진단: 개선의 실행가능성 증가와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재발 리스크의 구조적 축소

단순한 권고 나열이 아닌, 감독의 평가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증빙 패키지' 목적의 감사보고서 제공

형식과 내용의 일치: 제출자료의 체계화로 감독 대응 시설 득력 증대 및 보완요구에 대한 대응시간 단축

감사의 결론과 절차기록을 임원 면책 및 방어논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성 검증 및 기록 보전

책무 리스크의 실제적 완화: 임원에 대한 제재 위험 감소와 이사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 **광범위한 표집·검증 역량의 확보:** 딜로이트 감사본부는 다양한 업권·사례를 포함한 표집기법과 표준화된 검증절차를 보유하고 있어 내부감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 ✓ **전문성·다학제 역량의 동원:** 자금세탁방지 감사는 회계·내부통제 검증을 넘어, 데이터 분석, 포렌식, AML 규제 해석, 제재 및 국제거래 관련 이해가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딜로이트는 다학제적 전문 인력을 통합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단편적 지적이 아닌 근본원인 중심의 진단과 실행 가능한 개선 권고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 **독립성과 보고권위의 강화:** 딜로이트 감사본부 소속 외부전문가의 감사보고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될 경우 내부 의사결정과 감독당국 대응 측면에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시의성 있는 집중감사·후속검증 수행 능력:** 전담 감사팀을 단기간 집중 투입하거나, 필요시 분기별·반기별 후속검증을 설계함으로써 연 1회 감사의 시차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 변화나 특정 리스크 노출 이후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 ✓ **이행관리와 완결성 검증의 일원화:** 딜로이트 감사본부는 권고사항의 우선순위화, 실행 가능성 평가, 완료검증(closure testing)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감사 결과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규정해석·국제사례 적용의 신속성:** 딜로이트 감사본부는 최신 감독지침·해외제재 사례·국제적 모범사례를 감사절차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규제 변화에 대한 내부 적용 속도를 제고하고 잠재적 준수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AML 감사 가치

감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영역별 진단 결과 조서와 감사에 활용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실효적 제안을 별도로 제공

Audit Checklist

- ✓ 법령·정책 변동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규제준수의 일관성 유지
- ✓ 위험평가·거래모니터링 등 핵심통제를 분류·가중치화해 잠재리스크와 우선순위 명확화
- ✓ 설계의 효과성과 운영의 적정성 평가로 이원화 하여,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사 보고서

- ✓ 감사범위·점검절차·검증논리를 구조화해 AML 통제환경을 객관적으로 문서화
- ✓ 취약지점·통제미비·운영상 불일치 사례를 근거 중심으로 제시
- ✓ 감사의견·시정권고·후속모니터링 기준을 통일된 형식으로 제시해 이행책임과 추적체계 명확화

개선과제

- ✓ 통제공백·절차왜곡·데이터 불일치를 원인별로 분류해 개선우선순위 재정립
- ✓ 룰셋 정교화·KYC 흐름 재설계·증빙자동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설계·적용
- ✓ 책임주체·시한·성과지표(KPI)를 명문화해 개선활동을 제도화하고 지속적 통제고도화 촉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자금세탁방지(AML) 전략

자금세탁방지(AML) 전략은 독립적이고 증거 기반의 AML 감사를 통해 통제의 실효성과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규제 및 감독 이슈에 대해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반복적 제재와 감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민홍기 대표

금융산업통합서비스 리더

☎ 010 6279 4092

✉️ homin@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 |
금융 부문 리더

☎ 010 8898 3865

✉️ hyuchang@deloitte.com



김선호 파트너

자금세탁방지 감사 서비스 |
회계감사 부문

☎ 010 7401 1862

✉️ sunhkim@deloitte.com



정옥성 Senior Manager

자금세탁방지 감사 서비스 |
회계감사 부문

☎ 010 4623 4689

✉️ okjeong@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규제 및 재무 리스크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10 3721 7613

✉️ syeum@deloitte.com



서영교 이사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 자문 |
경영자문 부문

☎ 010 7377 7850

✉️ younseo@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연구원

정옥성 Senior Manager
ok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